

# 살충제 살포 고지 계획서

파라마타 시



CITY OF  
PARRAMATTA



# 1. 머리말

본 살충제 살포 고지 계획서는 2017년 살충제 법규(법규)의 요건에 의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획서의 목적은 공공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야외 공공 구역에 실시되는 살충제 살포에 대하여 지역사회 일반적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주민들이 살충제와의 접촉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카운슬은 살충제가 공공 구역에 안전하고 신중하게 살포되어 지역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카운슬은 합당한 경우에만 살충제를 사용하고, 소기의 효과를 위해 필요한 최저치의 독성을 지닌 살충제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카운슬이나 그 위탁 업체가 공공 구역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이를 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획에 해당되는 공공 구역 - 해당 구역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상 및 그 사용 빈도
- 카운슬이 공공 구역 살충제 살포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방법과 시기 (예: 사용되는 고지 방식)
- 계획에 대한 향후 검토 진행 방식
- 계획에 대해 카운슬과 논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락처 정보

카운슬은 잡초를 제거하고 카운슬 자산을 관리하며, 해충의 피해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해충의 피해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방제책이 있는 경우 살충제 살포를 제한하기 위해 대체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 2. 본 계획에 해당되는 공공 구역

카운슬에서는 본 카운슬의 지역 정부 구역 내에 있는 다음과 같은 야외 공공 구역에 살충제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 다음을 포함한 공원 및 공공 정원
  - 놀이터
  - 피크닉 및 바비큐 구역
  - 도로 폐쇄 및 기타 야외 녹지 구역
- 다음을 포함한 운동장 및 경기장
  - 테니스 코트
  - 크로켓 코트
  - 공용 수영장
- 다음을 포함한 도로, 길, 통로, 도로변
  - 가로수
  - 가로수단
- 숲지대 보호구역
- 배수로 및 부속 지역
- 카운슬 건물 및 그 주변

공공 구역 범주, 이용자 그룹, 사용 빈도, 사용되는 살충제 및 고지 방법이 부록 A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 3. 고지 방법

본 계획서의 이 섹션은 공공 구역의 살충제 사용에 대한 카운슬의 고지 방법 및 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 방법은 카운슬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 살충제가 살포될 수 있는 공공 구역의 이용 빈도
- 살충제에 민감할 수 있는 대중 집단(예: 어린이, 병약자, 임산부 및 노인)이 해당 구역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정도
- 해당 구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활동들이 살충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쉬운가(음식을 먹는 피크닉 장소, 땅바닥과 접촉하게 되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 사용되는 살충제 종류

살충제 살포에 대한 알림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함께 사용됩니다:

- 알림판
- 카운슬 웹사이트에 정보 게시(공공 구역에 사용되는 정기 및 대응적 살충제 살포 및 비상 살포에 대한 안내)
- 서신
- 팩스 및 이메일
- 우편함 전달
- 직접 방문
- 전화

## 고지 예외 사항

카운슬은 소매점에서 널리 판매되고 일반 가정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살충제(정원용 포함)를 소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운슬에서는 본 계획에 명시된 이외의 이러한 살충제 사용에 대해서는 고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끼 또는 에어로졸 스프레이 캔과 최대 15리터 용량의 긴 막대형 또는 휴대용 스프레이 병에 담긴 국소 제초제를 사용한 소규모의 실내 및 실외 방제 작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 3.1 야외 레크리에이션 구역

아래에 안내된 고지 방법은 카운슬의 지역 정부 구역 내에서 카운슬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다음과 같은 야외 공공 구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 공원 및 공공 정원
- 놀이터
- 피크닉 구역
- 운동장, 경기장 및 기타 스포츠 시설

이러한 공공 구역에 다음과 같은 살충제가 살포될 경우, 작업 일정으로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구역 부근 또는 주요 출입구 부근에 알림판이 설치되어 살포 후 최소 24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 광범위 선택성 제초제
- 광범위 비선택성 제초제
- 광범위 살충제
- 살진균제(해당 정원에 대해)
- 스프레이 방의제 및 개미 살충제
- 미끼 방의제(진행 중인 방제 계획의 일부인 경우 살충제 1회 사용으로 제한)
- 미끼 사용 유해 조류 퇴치제(진행 중인 방제 계획의 일부인 경우 살충제 1회 사용으로 제한)
- 미끼 쥐약(진행 중인 방제 계획의 일부인 경우 살충제 1회 사용으로 제한)

민감한 구역(3.5항의 '민감한 구역'에 대한 정의 참조) 부근에서 상기 살충제가 살포되는 경우, 살포 48시간 이전에 해당 주민들에게 전화, 서신, 우편함 전달 등의 방법(가장 실행 가능한 방법 선택)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 3.2 카운슬 빌딩

카운슬 건물, 카운슬 소유의 도서관, 커뮤니티 홀 및 센터, 그리고 카운슬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 시설에 다음과 같은 살충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충제 작업 최소 48시간 전에 해당 구역 부근 또는 주요 출입구 주변에 알림판이 설치되어 살포 후 최소 48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 국소 살충제
- 미끼 쥐약
- 스프레이 살충제
- 스프레이 개미 살충제
- 미끼 방의제
- 미끼 개미 살충제
- 미끼 사용 유해 조류 퇴치제

이와 더불어 카운슬의 어린이 보육 시설에 대하여 정기 살충제 사용이 있을 시에는 항상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5일 전에 고지가 제공됩니다.

## 3.3 민감한 구역에 대한 특별 조치

법규의 제18조항은 민감한 구역을 다음과 같은 장소로 정의합니다:

- 학교 또는 프리 스쿨(Pre-school)
- 유치원
- 보육 센터
- 병원
- 커뮤니티 의료 센터
- 요양원
-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EPA)이 민감한 구역으로 지정한 장소

민감한 구역에서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야외 공공 구역에 정기 살충제 살포가 실시되는 경우 살포 작업 전 48시간 이전에 해당 대상 주민들에게 특별 고지 방법이 제공됩니다.

비상 살포가 아닌 대응적 살충제 살포가 민감한 구역 인근의 야외 공공 구역에 실시되는 경우 카운슬은 살포 전에 즉시 전화, 방문 또는 우편함 전달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이를 알립니다.

민감한 구역 부근의 야외 공공 구역에 발생한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해 살충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카운슬은 가능한 한 살포 작업 최소 30분 전에 해당 민감 지역에 위치한 집들에 방문하여 위험한 해충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살충제가 곧 살포될 것임을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3.4 살충제 응급 살포

벌레에 물린 사례가 발생했거나 위험한 해충(설치류, 말벌, 벌, 독거미, 벼룩, 콧속 진드기 또는 이와 유사한 생명체)이 발견된 경우, 공공 장소에 살충제를 응급으로 살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카운슬은 가능한 한 살포 작업 시 인근에 알림판을 세워 공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 안내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 3.5 살충제 살포 업체 및 공공 구역 세입자

카운슬이 살충제 살포 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카운슬은 본 계획서의 요건에 따라 고지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공공 부지로 남아있는 카운슬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 본 계획에 의거하여 카운슬에 살충제 살포를 공지해야 합니다.

### 4. 제공되는 정보

법규의 41(h)항에 따라 살충제 살포에 대한 고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사용될 살충제 제품의 전체 제품명
- 방제 대상 해충의 종류를 명확하게 적시한 살포 목적
- 살충제 살포 예정 날짜 및 기간
- 살충제 살포 구역
- 고지 관련 상담과 관련해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는 카운슬 담당 직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제품 라벨 또는 호주 농약 및 수의약품 관리국(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 APVMA)의 허가증에 명시된 살포 지역 재입장 및 이용에 대한 모든 경고문

알림판은 일반 주민 및 인부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준화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 5. 본 계획서 공지 방법

카운슬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알립니다:

- 운영 시간 동안 카운슬의 도서관 및 주 사무소에 무료 대중 열람 가능한 계획서 사본 비치
- 카운슬의 웹사이트 [cityofparramatta.nsw.gov.au](http://cityofparramatta.nsw.gov.au)에 계획서 내용 게시
- 파라마타 애드버타이저(Parramatta Advertiser)에 안내문 게시

### 6. 계획서에 대한 향후 검토

고지 계획서는 3년마다 검토됩니다. 검토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계획 이행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
- 공공 전시 장소에 변경 예정 사항과 함께 계획서 비치 및 주민 의견 제안 요청
- 주민 제안을 감안한 계획 변경 권고 (해당하는 경우)

### 7. 연락처 정보

공공 구역 살충제 살포와 관련하여 고지 계획에 대해 카운슬과 논의를 원하시거나 상세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다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Manager Parks**

**City Operations**

**전화: 9806 5000**

**이메일: [council@cityofparramatta.nsw.gov.au](mailto:council@cityofparramatta.nsw.gov.au)**

**웹사이트: [cityofparramatta.nsw.gov.au](http://cityofparramatta.nsw.gov.au)**

### 부록

부록 A – 구역 구분 및 고지 절차 요약

**[cityofparramatta.nsw.gov.au/recreation-environment/our-parks/list-of-parks-and-reserves](http://cityofparramatta.nsw.gov.au/recreation-environment/our-parks/list-of-parks-and-reserves)**

(부록 A) 구역 구분 및 고지 절차 요약

카운슬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 구역	주 이용자 그룹	이용 빈도	사용되는 살충제 종류	고지 방법
다음에 포함된 공공 공원 및 정원 • 놀이터 • 피크닉 및 바비큐 구역	• 어린이 및 젊은 가족 • 연장자 • 일반 레저 이용자 (조깅, 산책, 피크닉) • 기타 사교 그룹	높거나 매우 높음	• 비선택성 제초제의 국소 살포 • 쥐약	본 계획서를 통한 고지만
		짧게 또는 중간 정도의 시간으로 자주 이용  주말 또는 방학 기간 동안 긴 시간 이용	• 선택성 제초제의 광범위 살포 • 살충제(접촉성 및 침투성)	살포 구역 근처 눈에 잘 띄는 곳에 알림판 설치
운동장 및 기타 스포츠 시설	• 스포츠 클럽 및 협회 • 학교 스포츠 그룹 • 일반 레저 이용자 • 캐주얼 스포츠 이용자	높음	• 비선택성 제초제의 국소 살포 • 쥐약	본 계획을 통한 고지로 제한
		스포츠 시즌 및 일정마다 다름	• 국소 살충제 • 선택성 제초제의 광범위 살포 • 광범위 발아전 제초제 • 광범위 살충제 • 살진균제	살포 구역 근처 눈에 잘 띄는 곳에 알림판 설치
도로, 길, 통로, 자연로, 지역권 및 배수로, 가로	• 일반 대중 - 주민 및 방문자 •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자동차 운전자	중간	• 비선택성 제초제의 국소 살포	본 계획서를 통한 고지만
숲지대 보호구역 및 기타 자연 지역	• 일반 레저 산책객 • 숲 관리 자원봉사자	낮음	• 비선택성 제초제의 국소 살포	본 계획서를 통한 고지만
			• 선택성 제초제의 광범위 살포 • 살충제(접촉성 및 침투성) • 쥐약	살포 구역 근처 눈에 잘 띄는 곳에 알림판 설치
카운슬 빌딩 및 주변 구역	• 도서관 이용자 및 어린이 보육 위탁자 • 커뮤니티 그룹/협회 • 직원 및 방문자 • 주민	높음	• 국소 살충제 • 국소 제초제 • 기체 및 액체 스프레이 살충제 및 미끼 살충제 • 미끼 사용 조류 퇴치제 • 쥐약	본 계획서를 통한 고지만
			민감한 구역 또는 그로부터 20미터 내에 위치한 장소에 대해서는 민감한 구역에 대한 특별 조치(3.3항 참조)가 적용됩니다.	



**CITY OF  
PARRAMATTA**